

인천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가합610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문옥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439,924원 및 그 중 93,153,568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A는 2021. 7. 28.부터 2021. 9. 3.까지는 연 8%의, 피고 B는 2021. 7. 28.부터 2021. 10. 1.까지는 연 8%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A는 2021. 9. 4.부터, 피고 B는 2021. 10.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2. 22. 접수 제67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 12. 24.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위 피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재판장 판사 김지후, 판사 이주일, 판사 이인화

별지